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훈기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02 발의연월일: 2024. 6. 3.

발 의 자:이훈기·오기형·이성윤

김영배 · 송재봉 · 문금주

이연희 · 김기표 · 안호영

황명선 · 강훈식 · 이재관

남인순 · 김영환 · 김남희

복기왕 • 양부남 • 김현정

황정아 · 정진욱 · 위성락

민형배 · 박홍배 · 이수진

서영교 • 박지혜 • 이건태

정일영 · 장종태 · 박균택

정을호 · 허종식 · 임호선

임미애 · 김정호 · 신영대

어기구 • 신정훈 • 이기헌

이강일 • 차지호 • 권향엽

이용우 · 김원이 · 박민규

박희승 · 김용만 · 김남근

염태영 · 모경종 · 윤종군

김 유 · 이학영 · 조승래

김태년 • 박해철 • 박선원

정성호 · 오세희 · 전진숙

이상식 • 김태선 • 김 현

안태준 · 허성무 · 부승찬

유동수·조계원·이정문 김교흥·강유정·이재강 조인철·박성준 의원 (74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한국교육방송공사가 공적 책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각 방송사의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운영을 통해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.

그런데 현행법은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이사와 사장 선임 과정에 있어 정치적 영향력를 배제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어 한국교육방송 공사의 정치적 종속성에 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고 있음.

이에 한국교육방송공사의 공적 책임을 구현하고 독립성, 정치적 중립성 및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확대 및 개편하고, 사장 선출 방식을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하려는 것임(안 제13조제3항 및 제13조제4항·제7항 단서·제8항·제9항·제14조의2 신설 등).

법률 제 호

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2항 중 "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임명한다"를 "제13조에 따른 이사회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 다"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"방송통신위원회에서"를 "이사회의 제 청으로 방송통신위원회에서"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 중 "임명한다"를 "임명하되,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"로 한다.

제13조제2항 중 "9명"을 "21명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조 제7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10항부터 제12항까지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하며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7항(종전의제6항)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이사는 방송에 관한 전문성, 지역성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추천된 사람을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한다.
- 국회 교섭단체가 의석 수 비율에 따라 추천하는 사람 5명. 이 경우 각 교섭단체는 성별(性別)로 각각 1명 이상을 추천(교섭단체가

- 1명을 추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)하여야 하고,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결로 확정한다.
- 2. 방송통신위원회가 선정한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가 추천하는 사람 3명. 이 경우 성별로 각각 1명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.
- 3. 공사의 정관으로 정하는 시청자위원회가 추천하는 사람 4명. 이 경우 성별로 각각 2명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.
- 4. 방송 전문성과 방송 보도, 제작, 기술 등의 직종 대표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목의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6명
 - 가. 방송기자연합회 추천 2명
 - 나. 한국피디연합회 추천 2명
 - 다.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추천 2명
- 5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 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2명. 이경우 성별로 각각 1명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.
- 6.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1명
- ④ 제3항 각 호에 따른 추천주체는 이사 추천시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하고, 이를 위한 자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며, 공모·의견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.
- 다만, 제14조제1항제5호의2에 따른 사장의 임명제청은 제14조의2제4항에 따라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가 추천한 3인 이하의 복수의 사장후보자에 대하여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⑧ 제7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사장 임명제청에 관한 사항이 추천일

부터 30일 이내에 2회 이상 부결되는 경우에는 마지막 투표시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,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득표자 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되, 다수득표자를 임명제청한다.

- ⑨ 제14조의2제4항에 따른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의 사장 후보자 추천 및 이사회의 사장 임명제청 시 그 절차와 과정은 공개적이고 투명한 방식으로 진행하여야 한다.
- 제14조제1항에 제5호의2 및 제5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 5의2. 사장·감사의 임명제청 및 부사장의 임명동의 5의3. 제14조의2의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 구성과 운영

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14조의2(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 설치 등) ① 이사회에 공사의 사장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한 국민위원회(이하 "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" 라 한다)를 둔다.
 - ②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는 성별, 연령, 지역 등을 고려하여 100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 - ③ 이사회는 공개모집 등을 통하여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가 공정하게 구성되도록 하여야 하며,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.
 - ④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는 사장후보자를 3인 이하의 복수로 추천하여야 한다.
 - ⑤ 이사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사장의 임기만료 90일 전까지

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.

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 회의 구성과 운영 및 사장후보자 추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가 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임원 및 이사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된 임원 및 이사의 임기는 이 법의 시행과 동시에 종료된다. 다만, 이 법 시행 당시의 임원 및 이사는 이 법에 의한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한다.

제3조(다른 법률의 개정)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제4호 중 "사장ㆍ이사"를 "이사"로 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혅 했 개 정 아 제9조(임원) ① (생 략) 제9조(임원) ① (현행과 같음) ② 사장은 방송통신위원회 위 ② -----제13조에 따른 이사 회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 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의 동의 를 받아 임명한다. 다. ③ 감사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③ ----이사회의 제청으로 임명한다. 방송통신위원회에서-----. ④ 부사장은 사장이 임명한다. ④ -----임명하되,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 제13조(이사회의 설치 및 운영) 제13조(이사회의 설치 및 운영) ① (생략) ① (현행과 같음) ② 이사회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하는 비상임이사 9명으로 -----21명--구성한다. ③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하는 ③ 이사는 방송에 관한 전문성, 지역성 및 사회 각 분야의 대 이사에는 교육부장관이 추천하 는 사람 1명과 대통령령으로 표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교육 관련 단체에서 추 따라 추천된 사람을 방송통신 천하는 사람 1명이 포함되어야 위원회가 임명한다. 한다. 1. 국회 교섭단체가 의석 수 비 율에 따라 추천하는 사람 5 명. 이 경우 각 교섭단체는 성별(性別)로 각각 1명 이상 을 추천(교섭단체가 1명을

- 추천하는경우는제외한다)하여야하고,국회소관상임위원회의의결로확정한다.
- 2. 방송통신위원회가 선정한 방송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가추천하는 사람 3명. 이 경우성별로 각각 1명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.
- 3. 공사의 정관으로 정하는 시 청자위원회가 추천하는 사람 4명. 이 경우 성별로 각각 2 명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 다.
- 4. 방송 전문성과 방송 보도,
 제작, 기술 등의 직종 대표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목의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6명가. 방송기자연합회 추천 2명나. 한국피디연합회 추천 2명다.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추천 2명 천 2명
- 5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
 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
 2명. 이 경우 성별로 각각 1
 명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
 다

<u><신 설></u>

④·⑤ (생 략)

⑥ 이사회는 재적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<단서 신설>

<신 설>

- 6.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추 천하는 사람 1명
- ④ 제3항 각 호에 따른 추천주 체는 이사 추천시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하고, 이 를 위한 자체적인 기준을 마련 하며, 공모·의견수럼 등의 과 정을 거쳐야 한다.
- <u>⑤</u>・<u>⑥</u> (현행 제4항 및 제5항 과 같음)
- <u>⑦</u> -----

지14조제1항제5호의2에 따른 사장의 임명제청은 제14조의2제4항에 따라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가 추천한 3인 이하의 복수의 사장후보자에 대하여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⑧ 제7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사장 임명제청에 관한 사항이 추천일부터 30일 이내에 2회 이상 부결되는 경우에는 마지 막 투표시 최고득표자와 차점 자에 대하여,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<u><신 설></u>

⑦ ~ ⑨ (생 략)

제14조(이사회의 기능)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· 의결한다.

1. ~ 5. (생 략) <u><신 설></u>

<신 설>

6. ~ 12. (생 략) ② (생 략) <신 설> <u>결선투표를 하되, 다수득표자를</u> 임명제청한다.

⑨ 제14조의2제4항에 따른 사 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의 사장 후보자 추천 및 이사회의 사장 임명제청 시 그 절차와 과정은 공개적이고 투명한 방식으로 진행하여야 한다.

<u>⑩</u> ~ <u>⑫</u> (현행 제7항부터 제9 항까지와 같음)

제14조(이사회의 기능) ① -----

-----.

1. ~ 5. (현행과 같음)

5의2. 사장·감사의 임명제청 및 부사장의 임명동의

5의3. 제14조의2의 사장후보국 민추천위원회 구성과 운영

- 6. ~ 12. (현행과 같음)
- ② (현행과 같음)

제14조의2(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 회 설치 등) ① 이사회에 공사 의 사장후보자를 추천하기 위 한 국민위원회(이하 "사장후보 국민추천위원회"라 한다)를 둔 다.

②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는 성별, 연령, 지역 등을 고려하 여 100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③ 이사회는 공개모집 등을 통 하여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 가 공정하게 구성되도록 하여 야 하며,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 회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. ④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는 사장후보자를 3인 이하의 복수 로 추천하여야 한다. ⑤ 이사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 으면 사장의 임기만료 90일 전 까지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 를 구성하여야 한다.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규 정된 사항 외에 사장후보국민

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및

사장후보자 추천 등에 필요한

사항은 이사회가 정한다.